

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 장치(제155조의2 관련)

1.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)에서 "주행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"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7조에 따른 가속제어장치, 같은 규칙 제88조의2에 따른 타이어, 같은 규칙 제54조 및 제110조의2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, 같은 규칙 제85조제4항에 따른 사륜형이륜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, 같은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주행 안전장치, 같은 규칙 제15조의2 및 제90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기압고무타이어를 말한다.
2.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3)에서 "조향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"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및 제89조에 따른 조향핸들 및 조향바퀴를 말한다.
3.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4)에서 "제동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"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, 제67조, 제90조 및 별표 34에 따른 제동장치를 말한다.
4.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5)에서 "연료장치 및 전기·전자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"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1조에 따른 연료누출 방지장치, 같은 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전자파 장치, 같은 규칙 제18조의2 및 제91조제4항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, 같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구동축전지, 같은 규칙 제69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,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수소가스 연료장치 및 같은 규칙 제91조제6항에 따른 기체연료 내압용기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.
5.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6)에서 "차체 및 차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"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02조에 따른 승객보호장치, 같은 규칙 제105조에 따른 앞면창유리, 같은 규칙 제92조에 따른 천정, 같은 규칙 제96조에 따른 후부안전판, 같은 규칙 제102조의2에 따른 보행자보호장치 및 같은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측면보호대를 말한다.